

2024년 방문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치위생사)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치위생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모집개요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구강보건사업	치위생사 (기간제근로자)	1명	· 방문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교육 및 행정 보조 등	2024. 5..16 ~ 12. 15. (7개월) ※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 응시분야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채용직종	자격요건
치위생사	· 치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각 1년이상 경력자

○ PC 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 MS office 등)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일정 및 방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4.5.1.(수) ~ 5.12.(일)	2024.5.13.(월) (개별 통보)	2024.5.14.(화) (면접시간 개별 통보)	2024.5.14.(화)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연락 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마포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2층)
 - ※ 근무시간내 접수(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 접수 : luna41@mapo.go.kr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 해당분야 면허증 사본 각 1부 (치위생사면허증, 운전면허증)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PC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5. 근무조건

- 보 수 : 130,000원/일(4대보험 포함)
- 근무일수 : 주 4일(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무시간 : 주 32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보수지급일 : 근무일수에 따라 4대 보험료 차감 후 익월 5일 이내 지급
- 필수 조건 :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가능자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및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근무 포기·취소 또는 3개월이내 사직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확정 후 근무 전 자진포기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이나 내부사정에 의해 채용일정 및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3153-91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